

# 忠清北道宗教團體醫療業에 대한 道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案

## 檢 言寸 幸民 告

1. 提出者：忠清北道知事

2.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

가. 提出日字 : 1992年 7月 18 日

나. 回附日字 : 1992年 7月 19 日

3. 提案理由

○ 宗教團體가 直接 運營하고 있는 醫療業에 對하여 地方稅를 免除하여 좀으로써 이들이 社會福祉事業을 圓滑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爲함.

4. 主要骨子

가. 免除對象 : 宗教團體가 運營하는 醫療業의 事業用에 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建築物 및 그 附屬土地 (案 2條)

나. 免除稅目 : 取得稅, 登錄稅, 共同施設稅 (案 2條)

## 5. 檢討意見

《 報告者 : 專門委員 李 清 》

忠清北道 宗教團體 醫療業에 對한 道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을 檢討  
한바,

非營利 事業者가 宗教, 慈善, 學術等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取得하는 物件  
에 對하여는 地方稅法 第107條 (用度區分에 對한 非課稅)의 規程에  
依하여 取得稅를 免除하여 주고 있는바,

民法 第32條에 根據를 두고 設定된 財團法人的 醫療法 第30條第2項 4號  
및 同法第31條의 規程에 依하여 醫療開設 許可를 받은 宗教團體가 住民

의 保健增進을 為하여 非營利事業으로 社會福祉事業을 推進코자 取得  
하는 物件에 對하여 取得稅, 登錄稅 및 共同施設稅를 免除하여 줄은

앞으로 社會福祉 事業이 圓滑히 推進되어 住民福祉增進에 크게 寄與하게  
될것으로 判斷됨은 물론 非營利 事業者에 對한 衡平課稅의 原則을 實現  
케 되는 것으로서 本 制定條例案은 妥當한 것으로 思料됨.